



2022년 개정된 의료법규 자료집

9월 개정 / 2023년 1월 시행 반영



M E D I C I N E L A W

Contents

• 국민건강증진법	3
• 지역보건법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 검역법	14
• 혈액관리법	16
• 국민건강보험법	18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1

국민건강증진법

<p><신 설></p>	<p>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①~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13. (생략)</p> <p>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p> <p>15.~26. (생략)</p> <p>⑤~⑨ (생략)</p>	<p>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13. (현행과 같음)</p> <p>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p> <p>15.~26. (현행과 같음)</p> <p>⑤~⑨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신 설></p>	<p>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p> <p>①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지역보건법

<p>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p>	<p>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 2021.1.12, 시행 : 2022.1.13]</p>
<p>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p> <p>①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2021.7.27, 시행 : 2022.1.1]</p>
<p>제10조(보건소의 설치)</p> <p>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10조(보건소의 설치)</p> <p>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8.17, 시행 : 2022.8.18]</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1.~11. (생략)</p> <p>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13.~15. (생략)</p> <p>②~④ (생략)</p>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1.~11. (현행과 같음)</p> <p>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13.~15.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1.30, 시행 : 2022.12.1]</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p> <p>6.~8. (생략)</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p> <p>6.~8.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p> <p>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③~⑤ (생략)</p>	<p>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p> <p>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p> <p>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p> <p>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p> <p>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p> <p>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p> <p>4.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p> <p>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p> <p>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p> <p>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p> <p>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1. (생 략)</p> <p><신 설></p> <p>2.~15. (생 략)</p>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2.~15. (현행과 같음)</p>

<p>②~④ (생략)</p>	<p>②~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1.~6. (생략)</p> <p>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신설> <신설> <신설></p>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p> <p>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p> <p>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p> <p>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p> <p>③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p> <p>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중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p> <p>①~③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p> <p>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 략)</p>	<p>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p> <p>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6. (생 략)</p> <p><신 설></p> <p>7.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p>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p> <p>① (생 략)</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p> <p>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⑤ (생 략)</p> <p><신 설></p>	<p>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p> <p>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p>제6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6.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6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12.22]</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8조의2(감염병병원)</p> <p>① (생략)</p> <p>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후단 신설></p> <p>③·④ (생략)</p>	<p>제8조의2(감염병병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0.19, 시행 : 2022.4.20]</p>
<p>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p> <p>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것</p> <p>2.·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p> <p>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0.19, 시행 : 2022.4.20]</p>
<p>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p> <p>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후단 신설></p>	<p>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p> <p>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p>

<p>③~⑨ (생략)</p>	<p>③~⑨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10.19, 시행 : 2022.4.20]</p>
<p>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p> <p>① (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0.19, 시행 : 2022.4.20]</p>
<p>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p> <p>①~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0.19, 시행 : 2022.4.20]</p>
<p><신설></p>	<p>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p> <p>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3.22]</p>
<p>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3.22]</p>
<p>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①~④ (생략)</p> <p>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p> <p>⑥ (생략)</p>	<p>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p> <p>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2.1.11, 시행 : 2022.7.12]</p>

검역법

<p>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p> <p>① (생 략)</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⑤ (생 략)</p>	<p>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제15조(검역조치)</p> <p>①~③ (생 략)</p> <p>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5조(검역조치)</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p> <p>2.~5. (생 략)</p> <p>②~⑥ (생 략)</p>	<p>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p> <p>2.~5.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p> <p>①~③ (생 략)</p> <p>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⑤·⑥ (생 략)</p>	<p>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제2항·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생 략)</p> <p>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p>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2. (생략)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2.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12.21, 시행 : 2022.6.22]

혈액관리법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8. (생략)</p> <p>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0.·11. (생략)</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8. (현행과 같음)</p> <p>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0.·11.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p>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p> <p>①~③ (생략)</p> <p><신설></p>	<p>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p>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p> <p>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p> <p>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p>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p> <p>①·② (생략)</p> <p>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p>	<p>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p>

<p>2.~4. (생략) ④ (생략)</p>	<p>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p>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p> <p>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5. (생략) ③ (생략)</p>	<p>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p> <p>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상업무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p>제20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생략)</p>	<p>제20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현행과 같음) [개정 : 2021.3.23, 시행 : 2022.9.24]</p>

국민건강보험법

<p>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p> <p>①~④ (생략)</p> <p>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⑥·⑦ (생략)</p>	<p>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p>
<p><신설></p>	<p>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p> <p>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p>
<p>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p> <p>①~③ (생략)</p> <p><신설></p>	<p>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p>
<p>제63조(업무 등)</p> <p>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5. (생략)</p> <p>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p> <p>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신설></p> <p>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3조(업무 등)</p> <p>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p> <p>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p> <p>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p>
<p>제72조(보험료부과점수)</p> <p>①·② (생략)</p>	<p>제72조(보험료부과점수)</p> <p>①·② (현행과 같음)</p>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4. (생 략)

②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 2022.6.10, 시행 : 2022.12.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신설></p> <p>②~⑦ (생략)</p>	<p>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p> <p>②~⑦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12.21, 시행 : 2022.3.22]</p>
---	---